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 방 공 무 원 보 수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친화적인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을 확대하고 난임휴직을 신설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맞추어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의 초임호봉 확정 기준을 정비하고, 난임휴직 대상자에 대한 보수 지급방식을 규정하는 한편,

우수 인재의 공직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경력환산율표를 정비하여 호봉 경력 인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보수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신하거나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를 “대신하여”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를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제2항제4호의2”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를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제2항제4호의2”로 한다.

별표 2에 비고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호가목1)에 따른 경력 중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의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별표 3에 비고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호나목3)에 따른 경력 중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의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별표 4에 비고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호나목3)에 따른 경력 중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의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7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임호봉 확정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 전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8조 제3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초임호봉의 확정) ①·② (생략)	제8조(초임호봉의 확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u>대신하거나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u>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전부에 대하여 확정한다.	③ ----- ----- ----- ----- -- <u>대신하여</u> ----- ----- ----- -----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제27조(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제7호의3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제2항제4호의2 ---- ----- -----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2. (생략) ② ~ ④ (생략) 제46조(휴직기간중의 연봉감액)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1. 2. (생략) ② ~ ④ (생략)	-----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휴직기간중의 연봉감액)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제2항제4호의2-----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53